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4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7
□ 재무제표의 승인	7
□ 이사의 선임	10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6
확인서	18
□ 정관의 변경	2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3 월 04 일

성 명: (주) 한샘

권 유 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 상암사옥

전화번호: 02-6470-3068

성 명: 유재환

작성 자: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실 IR팀 계장

전화번호: 02-6470-315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 한샘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04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19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0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총회 진행과 의시	·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_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_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정관의변경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 한샘	보통주	6,274,504	26.7	본인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창걸	최대주주	보통주	3,635,180	15.45	최대주주	_
강승수	등기임원	보통주	150,199	0.64	등기임원	_
이영식	등기임원	보통주	59,217	0.25	등기임원	_
안흥국	등기임원	보통주	21,566	0.09	등기임원	_
최철진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등기임원	_
임창훈	등기임원	보통주	50,000	0.21	등기임원	_
최양하	계열사임원	보통주	509,730	2.17	계열사임원	_
윤신현	계열사임원	보통주	66,935	0.28	계열사임원	_
노정현	계열사임원	보통주	220	0.00	계열사임원	_
이창욱	계열사임원	보통주	96	0.00	계열사임원	_
김용하	계열사임원	보통주	2,500	0.01	계열사임원	_
오상우	계열사임원	보통주	2,028	0.01	계열사임원	_
황인철	계열시임원	보통주	6,500	0.03	계열사임원	_
조창식	특수관계인	보통주	15,400	0.07	특수관계인	_
박정복	특수관계인	보통주	214,000	0.91	특수관계인	_
조은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311,500	1.32	특수관계인	_
조은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168,750	0.72	특수관계인	_
조은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207,400	0.88	특수관계인	_
김미례	특수관계인	보통주	14,300	0.06	특수관계인	_
천정렬	특수관계인	보통주	71,700	0.30	특수관계인	_
조원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290	0.00	특수관계인	_
한샘드뷰연구재단	재단	보통주	1,300,000	5.52	재단	_
(주) 한샘넥서스	계열회사	보통주	121,220	0.52	계열회사	-
HANSSEM INC.	계열회사	보통주	174,949	0.74	계열회사	-
Л		_	7,103,680	30.19	_	_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1 1 0 1			<u> </u>		
성명	주식의	소유	회사와의	권유자와의	비고
(회사명)	종류	주식수	관계	관계	nl 17
이윤기	보통주	0	직원	직원	_
유재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_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_	해당사항없음	_	_	_	_	_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04일	2021년 03월 09일	2021년 03월 18일	2021년 03월 1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본 참고서류와 함께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개별 발송 될 소집통지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회사가 제안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_	<u> </u>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_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_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_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del>-</del>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0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0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0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전자우편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u>/ 1                                   </u>	
일 시	2021년 03월 19일 오전 11시
장 소	한샘 상암사옥 2층 대강당
9 T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_
전자투표 관리기관	_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_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u> </u>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1.03.09 ~ 2021.03.18
서면투표 방법	투표 후 회송용 봉투로 회송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회송용 봉
기니 구기 한대자당 등	투에 넣어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당사는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간접적 의 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열화상 카메라 등에 따른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0년 제 48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2,067,469백만원, 93,012백만원, 95,395백만원, 65,353백만원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21.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 66.8%, + 28.1%, + 53.0% 변동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제 48 기 2020. 12. 31 현재 제 47 기 2019.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48(당) 기말	제 47(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519,937,448,205	478,670,833,491
현금및현금성자산	105,730,217,965	144,506,704,18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4,623,700,000	95,515,902,528
기타유동금융자산	230,241,518,864	137,871,428,057
기타유동자산	24,709,292,476	18,899,524,100
당기법인세자산	218,062,314	76,787,669
재고자산	84,414,656,586	81,800,486,951
비유동자산	707,211,061,025	723,967,143,112
관계기업투자주식	_	167,859,815
유형자산	433,257,725,971	491,349,901,932
투자부동산	147,022,419,292	97,050,060,663
무형자산	39,359,443,593	47,997,513,19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0,774,248,953	76,403,110,160

기타비유동자산	9,040,299,014	8,454,793,388
이연법인세자산	7,756,924,202	2,543,903,964
자산 총계	1,227,148,509,230	1,202,637,976,603
부채		
유동부채	438,658,098,069	407,327,091,50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2,862,382,398	235,230,532,568
단기차입금	66,702,486,931	40,542,987,262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000
전환사채	_	7,996,179,171
당기법인세부채	18,401,738,001	3,682,331,770
기타유동금융부채	33,299,103,107	30,848,377,579
기타유동부채	38,005,000,220	22,275,200,708
충당부채	19,387,387,412	16,751,482,443
비유동부채	161,076,220,295	182,011,615,63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4,128,411,242	146,354,404,002
기타비유동부채	3,301,873,357	2,470,327,382
충당부채	207,471,602	222,054,232
순확정급여부채	10,438,464,094	13,764,830,015
장기차입금	3,000,000,000	19,200,000,000
부채 총계	599,734,318,364	589,338,707,132
자본		
자본금	23,533,928,000	23,533,928,000
자본잉여금	38,228,731,689	38,228,731,689
기타자본구성요소	(192,158,836,752)	(162,823,827,057)
이익잉여금	736,825,469,726	694,459,028,63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06,429,292,663	593,397,861,271
비지배지분	20,984,898,203	19,901,408,200
자본 총계	627,414,190,866	613,299,269,471
자본과 부채 총계	1,227,148,509,230	1,202,637,976,603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8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47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48(당) 기	제 47(전) 기
매출액	2,067,468,662,697	1,698,372,284,996
매출원가	(1,525,159,067,360)	(1,224,850,418,790)

매출총이익	542,309,595,337	473,521,866,206
판매비와관리비	(448,058,446,877)	(417,451,455,726)
대손상각비	(1,239,623,870)	(298,600,487)
영업이익	93,011,524,590	55,771,809,993
지분법이익	-	1,936,243,582
기타수익	21,937,243,470	27,021,163,662
기타비용	(19,641,664,253)	(10,997,994,960)
이자수익	7,595,976,816	9,187,818,985
기타의대손상각비	67,319,787	(207,106,959)
금융수익	87,328,003	99,494,965
금융비용	(7,662,636,455)	(8,352,851,0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5,395,091,958	74,458,578,229
법인세비용	(30,041,972,185)	(31,743,696,334)
당기순이익	65,353,119,773	42,714,881,89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3,585,929,770	42,723,443,445
비지배지분	1,767,190,003	(8,561,550)
기타포괄손익	546,178,252	5,035,479,57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9,477,083)	2,706,813,1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평가손익	18,999,877	(118,670,95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736,655,458	2,224,975,700
관계기업투자평가	_	222,361,652
총포괄이익	65,899,298,025	47,750,361,46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3,938,874,806	47,758,923,015
비지배지분	1,960,423,219	(8,561,550)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	3,674	2,42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47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제 48 (당) 기	제 47 (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53,520,623		63,975,42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19,946		20,112,268	
회계정책변경효과			(177,825)	
당기순이익	49,883,809		41,343,47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16,868		2,697,506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42,437,251)		(61,155,476)
임의적립금	20,000,000		40,000,000	
배당금 주당 배당금(율) 당기: 1,300원(130%) 전기: 1,200원(120%)	22,437,251		21,155,476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083,372		2,819,945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20일).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48기	제47기
보통주 주당 배당금(원)	1,300	1,200
보통주 시가배당율(%)	1.3	1.9
배당총액(백만원)	22,437	21,155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창걸	39.05.28	사내이사	미해당	최대주주 본인	이사회
박종헌	68.07.06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전재훈	56.05.03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흥비지 선명	7 CLTIO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기간	내용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창걸	(주)한샘 대표이사	1970 ~ 현재	(주)한샘 대표이사 명예회장	해당사항 없음
박종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4 ~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해당사항 없음
		1982.09 ~ 2018 06	한영회계법인(EY) 부대표	
		2006.06 ~ 2012.06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2007.02 ~ 2016.06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감사	
		2007.05 ~ 2016.0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운영) 위원	
전재훈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0.03 ~ 2016.02	(재)행복한학교재단 감사	해당사항 없음
		2011.04 ~ 2016.06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감사	
		2011.10 ~ 2012.03	서울대학교 기성회 이사(감사)	
		2015.02 ~ 현재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	
		2018.07 ~ 현재	대주회계법인 상임고문(부대표)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창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종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재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박종헌 후보자]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전공 교수로서 다년간 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3년 간의 한샘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전재훈 후보자]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다수의 재단법인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및 회계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3년 간의 한샘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창걸 후보자]

조창걸 사내이사 후보자는 한샘의 창립자로서,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종헌 후보자]

박종헌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전공 교수로서, 다수의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위원으로서의 자문 경험을 통해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재훈 후보자]

전재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재직중이며,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다수의 재단법인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및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 201706171异和墨川丹型12021-05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201706171早刊建川平昌1202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 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加速/IR≣/202

#IIRE 12021-08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그 이 그 1년 그 월 그고일

보고자: 박 폴란 ABOUTANE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 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170617/유재흰/IR팀/2021-02-22 13 40 이 문서는 보인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미사용시 파기)

비밀등급/사내한정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502/H 2 8 27 8

里工水之母是确定是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①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후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재 하여야 한다. 다면, 권유자가 해당 성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가재함 수 있다.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전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긍천,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재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등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통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 에 등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170617/유제화/위팀/2021 - 02 - 22 13:40 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의부 반출을 급합니다. (미사용시 파기)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등기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3)
미등기이사의 수	45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86,505,680
최고한도액	20,000,000,000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51,153,885
최고한도액	1,000,000,000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철진	70.10.03	사내이사	해당	였 미0	이사회

박종헌	68.07.06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전재훈	56.05.03	사외이사	해당	이 조	이사회
총(3)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니지 니더	TOTIO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기간	내용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철진	(주)한샘 전무	2009 ~ 2018	(주)한샘 감사실 부서장	해당사항 없음
최철신	(무)한참 신부	2018 ~ 현재	(주)한샘 경영지원부 부서장	애정사정 값급
박종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4 ~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해당사항 없음
		1982.09 ~ 2018 06	한영회계법인(EY) 부대표	
		2006.06 ~ 2012.06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07.02 ~ 2016.06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감사	
		2007.05 ~ 2016.0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운영) 위원	
전재훈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0.03 ~ 2016.02	(재)행복한학교재단 감사	
		2011.04 ~ 2016.06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감사	
	2011.10 ~ 2012.03	서울대학교 기성회 이사(감사)		
	2015.02 ~ 현재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		
		2018.07 ~ 현재	대주회계법인 상임고문(부대표)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철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종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재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철진 후보자]

최철진 감사위원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주)한샘 감사 및 경영 지원 부서장을 역임하며 재무 및 관리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종헌 후보자]

박종헌 감사위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전공 교수로서, 다수의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위원으로서의 자문 경험을 통해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재훈 후보자]

전재훈 감사위원 후보자는 현재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재직중이며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다수의 재단법인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및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 201706171早和港川丹里12021-03-02110-0 확 인 서

201706171早刊進川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201706171异和新月月1202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RE12021-03-0210:05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 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170617/유재환/IR팀/2021-02-25 10:05 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미사용시 파기)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그 이 그 1년 그 월 그고일

보고자: 박중리 Tome Yank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 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170617/유재흰/IR팀/2021-02-22 13 40 이 문서는 보인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미사용시 파기)

비밀등급/사내한정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 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합니다.

うの/ H フ 易 フ の B

보고자: 文本文明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15조(참고서류)

①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후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재 하여야 한다. 다면, 권유자가 해당 성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가재함 수 있다.

-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전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긍천,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재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등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통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 에 등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 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20170617/유제화/위팀/2021 - 02 - 22 13:40 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의부 반출을 급합니다. (미사용시 파기)

# □ 정관의 변경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40. 교육서비스업	
4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41. 학원운영업	사업목적 추가
	4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간 전에 각 주주에게 <u>서면으로</u>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2주간 전에	전에 각 주주에게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u>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
각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전자공시시스템) 추가 및
С.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	조항통합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	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	조항번호 변경(③→②)
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	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 선임	THOAT OLD HOL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제34조 이사 선임	조항 삭제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u>삭제&gt;</u>	
제43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43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u>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u> 하여 소집	소집기일 변경
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조합기를 현상
생략할 수 있다.	있다.	
제43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① 이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	제43조의 2 위원회	
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조항 신설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므	(제43조의 2)
수 있다.	가. 감사위원회	순서 변경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	나.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제43조의 2 → 제43조의
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및 상법 제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3)
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제43조의 3 [이사회 결의 사항]		
①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② 자금의 차입 등 금융기관 여신거래. 단, 일정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제43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T-01 (17)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 위임한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조항 삭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제43조의 3)
③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u>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u>	순서 변경
④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43조의 2 → 제43조의
⑤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	3)
⑥ 이사의 경업허용	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		
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거나 갈음한 사항		
제6장감사	제6장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제48조 감사 수와 선임		
① 이 회사는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감사위원회 구성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정관 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	그니!이의된 설립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사로 한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100분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③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	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	
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		
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9조 감사위원의 해임, 자격상실	
	① 주주총회가 4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면 해당	
제49조 감사 임기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② 상법 542조의 1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설치
시까지로 한다.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	
	한다.	
제50조 감사 보선	제50조 감사위원 보선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	
49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	사의 수가 제48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	감사위원회 설치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감사 직무	제5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① 강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u>④ 감사위원회는 제1, 2, 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u>	

제53조 감사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의 만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 보수와 퇴직금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	<u>&lt;</u> 삭제>	조항 삭제
한다.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비치 등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u> 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위원회</u> 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감사</u>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감사위원회</u>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2. <u>감사</u>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나. <u>감사위원</u>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부 칙 (2020. 3. 20.)	부 칙 (2021, 3, 19.)	
이 정관은 제 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정관 변경
다		